

# ‘학생인척 채팅’ 위장수사 오는 9월 시행

### 개정 아청법 공포...9월24일부터 시행

### 미성년 성범죄에 경찰 위장수사 허용

### ‘범의’ 입증 못하면 유죄 판결 어려워

### 경찰 “法 사전 허가 필요해 우려없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9월말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위장수사’는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착수 절차 등이 법률로 통제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3일 개정 아청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아청법은 6개월이 경과한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범죄를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위장수사가 도입되면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은 경찰이 가능한 위장수사를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나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이 용이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장수사가 자칫 과도한 합정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걱정도 있다.

합정수사는 상대방의 범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뉜다. 이중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유발형의 경우 불법수사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마약류 범죄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범의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의를 유발하고 범죄를 행한 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소송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장수사 역시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경찰은 이번에 도입되는 위장수사의 경우 범의유발형으로 분류될 소지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위장수사는 합정수사가 아니다.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한정해 절차와 방법 등 위장수사 조건을 모두 규정해 뒀기 때문에 범의유발에 해당할 수 없다”며 “조건을 갖췄는지 법원의 허가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용 우려가 억제된다”고 했다.

개정법은 경찰이 신분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디지털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규정도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경우 상급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긴급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결과적

으로 범원 허가는 꼭 필요하다.

결국 검찰과 법원 모두 범죄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허가하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적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다시 말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의 범죄 의도를 어느 정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장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장수사에 앞서 수사 대상자의 범죄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경찰에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경찰은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일선에서 위장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위법 정비와 조직을 준비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둔 데스크포스(TF)도 구성했고, 시민사회 등 논의를 거쳐 관련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 광주 남부소방서, 효율적 인명구조 위한 강제배연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18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강제배연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시 발생한 농연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외부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방 활동에 많은 장애가 발생해 인명구조가 어렵고 화재진압 또한 쉽지 않다.

남부소방서 지하층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4월까지 실시하며 다량의 연기를 배연장비를 활용해 배출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효율적인 소방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배연장비 조작방법 및 전개훈련 ▲송풍기 작동으로 인한 강제배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화재진압 ▲소방대원 현장활동 안전사고방지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고종현 119재난대응단장은 “화재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연기”라며 “시야 확보가 어렵고 열기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훈련해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훈련을 할 계획이다” 말했다.

최훈희기자

## 담양소방서, 소방차량 흡수방수진압숙달훈련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센터장 이인범)는 효율적인 소방용수 확보 및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해 곡성읍, 석곡면 하천변에서 소방차량 흡수조작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차량에 탑재된 흡수기능은 화재발생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현장 인근에 없는 경우, 가까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흡수해 방수, 진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요즘과 같은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 및 들불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조그마한 불씨는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용수확보가 가장 급선무이다.

그러나 화재현장과 소화전과의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그렇지만 인근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이 근처에 있다면 그 물을 잘 활용하여 불을 끄는 것도 진압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담양소방서는 즉각적인 화재진압대응에 필요한 관내 저수리 파악과 더불어, 인근 하천에 있는 물을 흡수해 방수하는 훈련 등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단련을 기하고 있다.

이인범 곡성119안전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작은 불씨가 강풍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의 훈련을 거쳐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영암소방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화재안전대책’ 추진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영암 실내체육관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 및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지난 16일 영암군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인 실내체육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완료했고, 해당시설의 소방시설 등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영암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강화(대응 2단계 등 소방서별 최고수위 소방력 기준 진압 훈련 실시 및 초기대응력 확보를 위한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 ▲정보관리(화재 등 유사시 출동소방대의 신속 대응을 위하여 관련 정보 사전공유 및 가상화재 훈련) ▲안전순찰(화재취약 시간대 소방차량을 이용한 화재예방순찰 활동) 등의 대응분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현 소방서장은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화재 예방 및 모든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예방, 대응분야까지 사전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소방점검 나왔다” 소방관 사칭 소화기 불법판매 기승

### 순천소방서 “소방관은 절대로 소화기 판매하지 않아요”

전남 순천 등지에서 소방관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고가에 강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 시중 판매가 1만3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2만5000~3만 원에 팔고 있는 사례 등 소화기 강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대를 건네고 6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다.

특히 멀쩡한 소화기가 구비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집주인에게 소방관을 사칭해 “내가 소방관인데 소화기를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수거한 소화기를 되파는 형식의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또 CCTV가 없는 집 등 소화에 불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소방서로는 상황을 통해 3월 초부터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22일에는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지난 1일 연향동의 60대 PC방 업주는 “사기범이 소방점검을 왔다고 했으며, 내부를 둘러보고 소화기를 1대 더 비치해야 한다며 구매를 요구해 2만5000원을 주고 소화기를 샀다”고 했다.

순천소방서는 소방관 사칭은 공무원사칭·사기·강매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사례를 모아 순천경찰

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소방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무상 보급을 하고 있을뿐 절대로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소화기 강제 판매 행위는 소방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즉시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